

대한장애인양궁협회 선거일 등 공고

2020년 12월 14일에 실시하는 제7대 대한장애인양궁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일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
대한장애인양궁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



- 선거명: 제7대 대한장애인양궁협회 회장선거
- 선거일시 및 투·개표장소: 2020. 12. 14.(월) 14:00, 소마미술관
- 선거인: 「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관」 제23조 제2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
-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

○ 자격 및 등록요건: 「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관」(이하 '정관') 및 「대한장애인양궁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」(이하 '규정')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[별지 참조]

○ 신청기간: 2020.11.30.(월) ~ 12.02.(수) [3일간] 매일 09:00 ~ 18:00

○ 등록장소: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사무실
(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로 424, 벨로드롬 107호)

○ 구비서류

필수서류

- 1) 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- 2) 가족관계증명서
- 3) 피성년후견인, 피정한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
(인터넷 발급 가능 <https://egdrs.scourt.go.kr/index.jsp>)
- 4) 후보자 이력서
- 5)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별지 제5호 서식)
- 6)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(별지 제6호 서식)
- 7) 회장 출연금 공약 확인서 - 공증 후 제출
- 8) 개표참관인 신청서

□ 해당되는 경우 제출

- 1) (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)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(별지 제4호 서식)
- 2) 퇴임증명서(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)

제11조(회장 후보자 자격요건) ② 장애인체육회(가맹단체 포함)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 시·도지부(가맹단체 시·군·구지부 포함) 및 시·군·구장애인체육회(읍·면·동장애인체육회포함)의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
5. 선거운동

- 기간: 2020.12.04.(금) ~ 12.13.(일)
- 방법: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(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)에 의거 진행

제18조(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) 후보자는 공보, 전화, 명함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,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6. 선거인명부 공고 및 열람기간

- 선거인 명부 공고 및 열람기간: 2020.12.04.(금) ~ 12.08(화)
※ 선거인 명부 공고 및 열람기간 동안 이의 신청 가능.

7. 금기 사항

- 선거운동 기간 미준수
-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,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
-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
- 입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 종사자를 운영하는 행위
- 선거관리위원 및 협회 직원이 특정인 지지 옹호, 격려하는 행위
-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
-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

8. 기타 사항

- 후보자 등록 문의: 02)425-4142
- 선거 관련 기타 일정
 - 후보자 등록 공고: 2020.12.04.(금) 홈페이지 공지
 - 당선인 공고: 2020.12.15.(화) 홈페이지 공지

[별지]

대한장애인양궁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결격사유

대한장애인양궁협회정관 제25조(임원의 결격사유)

-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양궁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양궁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2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 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 5. 국회의원
 6.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③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장애인양궁협회,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④ 장애인양궁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·직원은 장애인양궁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장애인양궁협회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양궁협회는 해당자로부터 장애인양궁협회와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장애인양궁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 -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장애인양궁협회 시·도지부,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장애인양궁협회 시·도 지부,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.

